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3.

발 의 자 : 어기구 · 박희승 · 이개호
김병주 · 조인철 · 박용갑
정춘생 · 서삼석 · 윤준병
김동아 · 한정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.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.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,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.

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(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제71조제3항제3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<u>2026년 12월 31</u>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제71조제3항제4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<u>2026년 12월 31</u>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<u>2031년 12월 31</u> 일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<u>2031년 12월 31</u> 일-----.</p>